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11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12일, 고영찬 의원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4년 11월 2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빈번한 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는 물론 다양한 환경 위해 요소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따라 공사장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공사장 안전관리와 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안 제3조 및 제4조)
-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추병수

나. 검토의견

#### 1) 제정 이유

○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하고자 의원발의됨.

####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정의함.
-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정의함.
- 공사장의 규모를 건축물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 한정하는 것은 관내의 소형공사장은 제외하고 중·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금천구 공사장 현황			
구분	대형 건축공사장 (10,000㎡이상)	중형 건축공사장 (2,000㎡초과~10,000㎡미만)	소형 건축공사장 (2,000㎡미만)
개소	10	12	16

구분	행정동	연면적	착공일	지상층	지하층	용도
중형 (12개소)	가산동	2,755.35	2021-11-16	16	2	업무시설
	독산1동	6,040.21	2022-07-18	16	2	업무시설
	독산1동	3,956.17	2021-12-14	11	1	업무시설
	독산1동	2,067.90	2023-10-20	8	2	업무시설
	독산1동	2,648.455	2024-10-04	13	1	업무시설
	독산1동	6,293.96	2024-09-24	8	2	공장
	독산3동	3,182.89	2023-03-22	5	2	업무시설
	독산3동	2,174.73	2021-04-09	11	1	업무시설
	독산4동	7,277.24	2024-07-04	17	2	공동주택
	시흥1동	3,762.32	2022-12-28	13	2	업무시설
	시흥1동	2,794.62	2023-02-01	16	1	업무시설
	시흥5동	4,467.05	2023-11-15	5	0	공동주택
대형 (10개소)	가산동	36,518.35	2022-06-14	10	5	방송통신시설
	가산동	39,589.65	2022-12-08	10	2	방송통신시설
	가산동	15,415.43	2022-10-12	15	4	공장
	가산동	41,310.37	2022-09-05	11	3	방송통신시설
	가산동	58,445.66	2022-10-25	20	5	공장
	가산동	17,422.83	2023-04-25	8	1	방송통신시설
	가산동	29,248.34	2023-05-30	15	4	공장
	시흥1동	11,080.58	2021-01-22	20	4	공동주택
	시흥1동	21,346.60	2023-10-27	6	2	자동차관련시설
	시흥1동	13,269.34	2023-10-04	20	4	공동주택

나) 공사장 안전관리와 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 (안 제3조 및 제4조)

-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규정함.
-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축관계자에게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 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안 제5조)

- 구청장이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